

5. 地方稅法中 改正法律(案) 立法豫告

內務部公告 第1997-28號 1997. 3. 31

주요 골자

- 가.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, 세무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납세자 권리현장」 제정을 입법화함.
- 나. 지방세부과를 위한 과세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과세적부 심사청구제도를 신설함.
- 다. 지방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현재는 행정소송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개선함.
- 라. 시군세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가 임의3심제도(처분청의 이의 신청 → 도지사의 심사청구 → 내무부의 재심사청구)로 되어 있어 납세자의 혼란과 권리구제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2심제도(처분청의 이의신청 → 도 또는 내무부의 심사청구)로 단수화함.
- 마.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사비의 정산 등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이 가능하도록 수정신고납부제도를 신설함.
- 바.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명목에 불구하고 조합원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개선함.
- 사. 무역업이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.

- 아.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신고기한을 양도소득세의 실제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선함.
- 자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중 타인이 사용수익(대부포함)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함.
- 차. 적용시한이 '97년말로 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(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)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되 기업의 경쟁력 향상, 농어민 등 서민복지증진을 위한 감면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함.

개 정 이 유

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입법화하고 지방세 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, 과세대상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기타 지방세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